2025년 「제4회 여성기업주간」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

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 등을 발굴·포상하기 위해『제4회 여성 기업주간』포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> 2025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 행사개요

- □ 목 적 : 제4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경제인들을 선정 · 포상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
- □ **시상식** : 2025년 제4회 여성기업 주간 행사(7월 예정)
- □ 주최주관: 중소벤처기업부/한국여성경제인협회
- □ 포상종류
 - **정부포상** : 산업 훈·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

구분	산업훈장	산업포장	표창(대통령, 국무총리)
수공기간	15년 이상	10년 이상	5년 이상

- * 수공기간은 현 재직기관 외에 관련 분야 여성경제활동 경력 합산 가능
- **장관**(이하)**표창** : 기획재정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농림축산식품 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세청장, 조달청장, 특허청장 등
- □ 신청기한 : ~ 2025년 2월 12일(수)까지
 - *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처(메일) 도착(접수)분에 한함
- □ 신청방법 : 이 공고문의 7페이지 참고

2 포상분야

□ 3개 분야 (62점 시상 예정) : ^①모범여성기업인, ^②모범여성근로 자, ^③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

① 모범여성기업인

-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,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**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**
- 고용창출, 매출, 수출 및 기술발전 등을 통한 국가경제기여, 여성고용 등 여성 친화 기업문화 조성 노력, 근로자 중심 경영, 사회공헌 등을 평가
- 부처별 포상 후보자 우대 및 자격사항
 - **공통사항:** 매출, 고용, 수출과 성장을 통한 국가경제기여, 여성친화 경영, 사회공헌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
 - **농림축산식품부 :** 식품 제조업체, 국내 농림,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우대(국내산 사용 등)
 - 고용노동부 :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시 심사에서 제외, 일자리창출,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실적 우수업체 우대,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업체 우대
 - **국세청** : 기장 미신고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 ■ **조달청** : 공공구매 조달실적 우수업체 우대

② 모범여성근로자(임원포함)

- 기술개발,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**중소**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
-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**모범이 되는** 여성근로자
- 근무기간, 직무수행능력, 경영혁신 기여도,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,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

③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(기관)

-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(기관) 소속 임직원 으로서 여성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
 - * 각 단체(기관)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, 비상근 임직원 제외
 - * 근무경력은 현 재직기관(기업) 외 여성기업 육성·지원·연구 관련 기관(기업)의 경력 합산 가능
-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(기관), 학계,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
-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
- 근무기간(설립·운영기간), 직무수행능력, 자기계발, 설립운영기간, 여성기업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

※ 공공구매 우수기관 우대

3 자격제한

□ 자격제한

- 중복수여의 금지: 상훈법 제4조(중복수여의 금지), 동법 시행령 제17조 2(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)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
- 재포상 금지기간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※ 추천예정일(2025.4.1.)
 - 훈장, 포장, 대통령 표창,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훈장 7년, 포장 5년,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
 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-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 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 또는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- ㅇ 형사처분 대상자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※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- 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・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- 「상훈법」제8조 및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 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및 기관)과 그 임원 등
 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10조 및 같은 법「시행규칙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- 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 추천제한(「사업상 등기부 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)
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-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-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- 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단,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- 최근 3년간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3, 같은 법「시행령」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합신용정보중기 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기타 '정부포상업무지침'에서 정한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
- ㅇ 각 정부부처의 내부포상지침상 추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자

4 접수방법

- □ 개인 직접 신청 : 이메일(posang@wbiz.or.kr) 신청
- □ 추천기관의 추천
 - 중소벤처기업부(지방청) 및 지방자치단체(중소기업 및 여성관련)
 - 여성기업단체(한국여성벤처협회, 한국여성발명협회, IT여성기업인협회 등)
 - 지방자치단체, 직능별 단체
 - 중소기업협·단체 및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, 금융기관
 -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(지역센터 포함) 등

<접수방법 안내>

- 이메일(posang@wbiz.or.kr) 접수
- 제출자료 : 신청부문별 [1] 작성자료 + [2] 증빙자료* 모두 제출
 - * [**작성자료** : [붙임1] 신청양식 한글(HMP)파일 및 [붙임2] 총괄표 엑셀(EXCEL)파일
 - ② 증빙자료 : 증빙자료 스캔(PDF)파일
- (주의사항1) 접수 시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'메일 제목'* 반드시 준수
 - * 메일 제목: 신청부문 추천대상자성명(업체명) (예시) 모범여성기업인 홍길동(길동주식회사)
- (주의사항2) 접수 시 '<u>제출서류 순서</u>'
 - 0. [자료일체]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(길동주식회사) 작성자료(서명날인본) 및 증빙(1~15)
 - ☑ 0. [작성자료]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(길동주식회사)
 - 젤 0. [총괄표] 모범여성기업인_홍길동(길동주식회사)
 - 👼 1. '22년, '23년 표준재무제표, '2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
 - 🚾 2. 사업자등록증명원
 - 👼 2-1. 말소사항포함 법인등기부등본
 - 👼 3. 경력증명서
 - 🚾 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- 👼 5. '22년, '23년, '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- ➡ 6.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명부
 - 👼 7. '22년, '23년, '24년 수출실적확인서
 - 👼 8. 지식재산권 사본(국내외 규격, 특허, 디자인등록, 실용신안 등)
 - 👼 9. 기타 인증 사본
 - 👼 10. 여성고용 우수 및 유지실적자료
 - 👼 11. 훈포장, 장관표창 등 표창 사본
 - 12. '22년, '23년, '24년 기부금 영수증(앞장 연도별 총액 기재 필수)
 - 📅 13. 여성기업확인서
 - 👼 14. 기업부설연구소,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
 - 👼 15. 공적조서 상 기타 증빙(조달실적, 여청친화경영, 근로자 중심 경영, ESG 경영 등)

5 심사

□ 선 정

제출서류에 의한 예비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 결정

□ 선정절차

- (신청·접수) 추천기관이 추천한 모든 추천자 접수
- (요건심사) 신청자격 적격여부, 제출서류 적정성 등 평가
- (제한사항 확인) 범죄·수사경력, 산업재해, 불공정 행위, 국세· 지방세 체납 조회,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제한사항 확인
- (공적평가) 심사위원은 대학교수, 업계전문가 등 여성 정책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구성
- (포상협의) 행정안전부와 포상규모 협의
- (공적심사) 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추천대상자 공적심사
- (공개검증) 중기부, 협회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
- (포상추천) 행정안전부에 포상대상자 추천
- (포상확정) 행정안전부가 포상대상자 확정 후 결정 통보
- (수상발표) 수상자에 한하여 <u>2025년 6월 말</u> 개별통보(예정)